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32회 임시회 (2019. 7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 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조희옥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

## **검 토 보 고 서**

### **1. 제출경위**

- 가. 의안번호: 19-88
- 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7월 15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7월 16일(화)

### **2. 제출사유**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**3. 주요내용**

#### **가.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업(안 제3조, 제4조)**

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,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,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,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,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,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#### **나.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(안 제5조)**

우리 구 거주자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
#### **다. 이용제한(안 제6조)**

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, 반입 제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등

#### **라. 관리·운영의 위탁(안 제7조)**

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규정 준용

#### **마. 수탁운영자의 의무(안 제8조)**

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,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,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목적 외로 사용금지 등

### **4. 참고사항**

#### **가. 관계법령**

- 1)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
- 2)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공공시설)

#### **나. 기타사항**

- 1) 입법예고: 2019. 6. 7. ~ 6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: 해당없음
- 4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-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「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‘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’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,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, 교육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과 복지,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센터 위탁 운영 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운영되는 바,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약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- 아울러, 공간사용에 따른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시설조성 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#### ※ 서울시 자치구 설치 현황

- 기 설치구(12개구): 성동, 서대문, 구로, 노원, 성북, 강서, 관악, 광진, 양천, 강동, 중구, 종로
- 2019 신규 설치구(4개구): 마포, 은평, 도봉, 영등포

# 참 고 자 료

## 1. 근로복지시설(노동자 종합지원센터) 설치 개요

### □ 추진근거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
- 「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
- 2019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선정(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주관)

□ 설치위치: 마포구 성산로4길 53(舊 구청 제3별관 3층)

□ 설치규모: 90m<sup>2</sup>(사무실, 상담실)

□ 운영인력: 센터장(1), 팀장(1), 팀원(2)

□ 운영방법: 민간위탁

□ 소요예산: 연간 평균 359백만원

※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인건비, 사업비 등 운영비는 시비 100% 지원

## 2. 관계법령

### 근로복지기본법

-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
**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 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지방자치법

**제144조(공공시설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  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